

보험목적양도법리의 한독비교연구

최 병 규*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비교연구와 시사점 |
| II. 독일법 내용 | 1. 계약 해지의 문제 |
| 1. 제정연혁 | 2. 보험료 부담 문제 |
| 2. 입법목적 | 3. 사고시 책임 문제 |
| 3. 요건 | 4. 종합적 검토 |
| 4. 효과 | IV. 제도개선방안 |
| 5. 강행규정여부 | 1. 기존 입법론 주장 |
| 6. 증명책임 | 2. 개정제안 |
| | V. 맺음말 |

I. 머리말

보험법제도는 2007년~2008년을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 보험법을 종래의 상법에서 분리·독립시켜 입법을 하였다. 독일도 2007년 근 100년 만에 보험계약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¹⁾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에 든 물건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양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보험목적이 양도되면 보험계약도 승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목적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적 이전행위를 가리킨다. 채권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반드시 소유권의 이전은 불필요하고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도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이에 대하여는 특히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세창출판사, 2009), 101쪽 아래 참조.

이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양도는 유·무상을 불문한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보험목적의 이전과 함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보통의 경우 보험의 목적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지위도 양도한다는 합의도 있어야 하고 계약자지위의 양도는 목적의 양도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양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있어서 이를 배서·양도하면 확실한 방법이 된다. 양도의 효과로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래 보험계약상의 지위도 양도하였는가 여부는 구체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다. 상법은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제1항). 이는 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명시적인 양도합의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양도의 통지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다. 이는 입법의 불비이다.²⁾ 또한 승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간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도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비되는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규정으로 동법 제95조와 제96조 등이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³⁾는 제95조⁴⁾와 연결되는 조문이다.

2) 박세민, 보험법(박영사, 2011), 503쪽; 장덕조, 보험법(법문사, 2011), 260쪽.

3)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양도 후의 해지) (1) 보험자는 한 달의 기간을 준수하면서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계약관계를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자가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멸한다. (2) 양수인은 보험계약관계를 즉시 또는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을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양수인이 양수 후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보험료 지급의 책임이 없다.

4)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보험목적의 양도) (1) 보험계약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소유하는 동안에 보험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험계약자 대신에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수 시점에 진행 중인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동법 제96조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우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독일법 내용

1. 제정연혁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 제2항은 내용상 구법 제70조 제1항, 제2항과 합치한다. 동조는 제95조에 의하여 제한된 보험자와 보험목적 취득자의 계약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 이때 양수인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기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보험을 든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보험자 및 양수인에게는 해지권이 부여된다. 해지권을 통하여 보험자는 원치 않는 주관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양수인은 더 유리한 보험계약을 찾을 수도 있고 보험보호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3항은 구법 제70조 제3항을 따르고 있다. 구법 제70조 제3항은 이전에 존재하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 결과 양도인에게 보험보호가 조기 종료하더라도 진행 중인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⁵⁾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 포기됨으로써(독일 보험계약법 제39조 제1항 참조) 양도인만이 보험료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양도인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보호 종료시까지만 일할 정산하여 부담한다.⁶⁾

(3) 보험목적의 양수 사실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주장할 수 있다.

5) 이 규정의 법적책적인 비판에 대하여는 Bruck/Möller/Sieg, *VVG*, 8. Aufl. (De Gruyter, 1961), § 70, Rdn. 45 참조.

6) Heyers, in: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Köln, 2010), S. 953.

2. 입법목적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는 동 제95조와 연결되는 조문이다. 양수인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에 들어선다는 법적효과는 그가 해지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약화되어 있다.⁷⁾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에 의한 보험관계의 이전은 보험자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계약당사자로 지위가 부여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사적자치에 대한 개입은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의하여 완화된다. 운송보험에는 특칙이 있다. 즉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는 운송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39조 제2항).⁸⁾

3. 요건

3.1 표시의 해석

원래 해지권은 권리자가 보험계약에 기속되지 않으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점은 객관적 수령인권역에 의한 해석에 의거하여 인정된다(독일 민법 제133조, 제157조). 이러한 점에서의 의문은 보험자에게서보다는 양수인에게서 더 크게 인정된다. 양수인은 거래사안에 대하여 경험이 더 적기 때문이다.⁹⁾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을 위하여 양수인이 진행 중인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 제2항 참조).¹⁰⁾ 그리고 양수인에 의한 보험해지로 전보가능성을 상실하는

7) Halbach, in: Rüffer/Halbach/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 (Nomos, 2009), S. 610.

8) Staudinger, in: Bruck/Möller, *VVG, Bd. III, 9. Aufl.* (Berlin, 2010), S. 703.

9)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9.

10)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Springer, 1999), § 70, Rdn. 27.

것이 그에게 득이 되지 않음이 보통이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에 의한 양수통지도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¹¹⁾ 이는 바로 독일 보험계약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은 새로운 보험계약자(양수인)에게 즉시 또는 진행 중인 보험기간말로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여 준다. 이때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가 아니라 보험기간말로 종료시키는 것이 형성권의 효력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¹²⁾ 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비록 보험료납부의무를 지지는 않더라도 보험자는 그 기간 동안은 보험보호를 양수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보험관계의 조기 종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³⁾ 또한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에 규정한 이외의 시점에 대하여 해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양수인이 계약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한은 보험보호를 향유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된다.¹⁴⁾

모든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처럼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의 형성권 의사표시도 도달을 요한다(독일 민법 제130조 제1항). 그 의사표시가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종료 이후에 보험자에게 도달하였고 양수인은 이미 그 기간종료 시에 계약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그러한 경우에 해지는 그 다음 기간종료시점에 효력을 갖게 된다(독일 민법 제140조).¹⁵⁾ 그 밖에 취소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119조 이하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¹⁶⁾

11) OGH, *VersR*(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1961), S. 335.

12)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München, 2004), § 70, Rdn. 6.

13)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28.

14) Honsel(Hrsg.), 위의 책, § 70, Rdn. 29.

15) Honsel(Hrsg.), 위의 책, § 70, Rdn. 30.

16) Staudinger, in: Bruck/Möller, 앞의 책, S. 704.

3.2 양도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형성권은 보험목적의 유효한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계약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를 유추하여 양수인에게 넘어간 보험관계 부분에 대하여만 보험도 해지할 수 있다.¹⁷⁾

해지가 물권법적인 법률행위 이전에 행하여지거나 이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해지는 대상이 없어진다. 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권리의 이전을 독일 보험계약법 제97조에 의하여 통지하면 보험자는 독일 민법 제412조, 제409조 제1항의 척도에 따라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을 원용할 수 있다. 처음에 무효이었던 형성권 의사표시가 취득구성요건 충족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는 의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를 반대하는 입장은 특히 법적안정성의 요청을 근거로 한다. 즉 그것은 결과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지조건을 적용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¹⁸⁾ 보험계약해소의 청약으로의 전환할 것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¹⁹⁾ 해지는 결국 가령 독일 민법 제141조에 따른 추인의 방법으로써 새로이 행하여져야 한다.

3.3 해지의 형태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의 의미에서의 표시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독일 보험계약법 제98조 제2문에 의하여 서면형식이나 텍스트형식을 합의하는 것, 더 나아가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²⁰⁾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해지는 구두로도 가능하다.²¹⁾

17)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9 ff.

18) Honsel(Hrsg.), 위의 책, § 70, Rdn. 4.

19) BGH, NZW(C.H.Beck, 1981), S. 44.

20)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8.

3.4 제척기간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 제2문은 계약해소권을 주장하는 데에 1개월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 1개월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독일 민법 제187조 제1항, 제188조 제2항, 제193조가 적용된다.²²⁾ 그에 의하면 해지가 타방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 권리를 활용함이 없이 기간이 도과되면 권리자의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취소될 수도 없다.²³⁾ 그 과정에서의 해지권자의 과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206조를 유추하여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한다.²⁴⁾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는 독일 민법 제1944조 제2항 제3문처럼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논의 시에 행하여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에 흠결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독일 민법 제242조에 의해 불공평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²⁵⁾

3.5 해지에의 관여자

3.5.1 표시 및 수령 정당성

해지권은 보험자에게 뿐만 아니라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에 의해 계약에 들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자에게도 인정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보험목적물 2중으로 양도하거나 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자는 최종취득자가 된다.²⁶⁾ 피보험자²⁷⁾는 그러한 해지권을 갖지

21)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14.

22)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5.

23) Bruck/Möller/Sieg, 위의 책, § 70, Rdn. 7.

24) Bruck/Möller/Sieg, 위의 책, § 70, Rdn. 6.

25) Staudinger, in: Bruck/Möller, 앞의 책, S. 705.

못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보험계약자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위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험대리인의 수령대리권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보험자에 의해 계약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독일 보험계약법 제71조에 의하여 보험자의 이름으로 해지할 수 있다.²⁸⁾ 무권대리인이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형성권을 행사하면 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독일 민법 제180조 제1문). 타당당사자가 대리권없음을 다투지 않으면 독일 민법 제180조 제2문, 제177조 제1항, 제184조 제1항은 권한자에게 해지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것을 허용하여 준다.

3.5.2 다수의 관여자

복수인이 보험목적물 공동소유 등으로 취득하면 보험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해지를 그들 각자에게 하여야 한다.²⁹⁾ 마찬가지로 복수의 양수인들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해지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물론 그중의 하나가 이 목적으로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는 그 혼자 하여도 된다.³⁰⁾ 각각 법적으로 독립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로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를 유추한 계약분할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계약관계는 독립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³¹⁾ 지금까지 1인 소유이었던 것을 보험목적의 개별공동소유부분을 양수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을 합의함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양수인인 새로운 보험계약자가 공동대리인을

26)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10.

27) 보험목적 양도와 피보험자 교체설 및 보험계약적 교체설에 대하여는 박종성, “보험의 목적의 양도,” 재판자료 제53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법원행정처, 1991), 383쪽 아래 참조.

28) Bruck/Möller/Sieg, 위의 책, § 70, Rdn. 10.

29) Lenski, *Zur Veräußerung der versicherten Sache*(Karlsruhe, 1965), S. 101.

30) Martin, *VersR*(1974), S. 410 ff.

31) Lenski, 앞의 책, S. 101.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해지권을 공동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³²⁾ 거꾸로 보험자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려하면 대리권이 있는 1인에게 행사하면 족하다. 이는 수동대리인 경우에는 공동대리인의 1인이 하면 족하기 때문이다.³³⁾ 일부 주장에 의하면 보험목적의 10%에 미달하는 작은 지분을 취득하는 양수인은 해지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³⁴⁾ 그러나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 하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기에 반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³⁵⁾

3.6 해지권 소멸

3.6.1 포기

당사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에 의한 해지권을 포기할 수 있다.³⁶⁾ 보험자의 해당 포기의 의사는 그가 양도사실을 알면서 양수인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에 표명되는 것이다.³⁷⁾

그에 반하여 양수인의 해당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령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3항 제2반문에 의하여 양수인은 보험료 납부의 무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이의 없이 보험료를 내더라도 포기를 바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³⁸⁾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보험보호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 그로 인해 최소한 즉시의 해지(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 제1선택)는 저지되는 것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률행위 차원에

32) 공동대리인 가운데 1인이 다른 공동대리인의 동의하에 행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BGHZ 64, S. 72 ff.

33) Palandt/Heinrichs, BGB(C.H.Beck, 2010), § 167, Rdn. 14.

34)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11.

35)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11.

36) Lenski, 앞의 책, S. 125.

37) RG, VA(1910), Nr. 516; Böhme(BB, 1957), S. 168.

38)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12.

서 보험관계 인수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가 그에 관여되지 않은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해지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³⁹⁾

3.6.2 원래의 보험계약자에 의한 재취득

양도인이 목적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험자는 마찬가지로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하지만 양도가 원래의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해지권을 부여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면 보험자는 그러한 해지권을 신의칙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242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독일 민법 제82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⁴¹⁾ 보험관계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에 의해 그 사이의 양수인에 의해 종료되면 원래의 보험계약자에 의한 재취득에 의하여도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그 사이의 양수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에 의해 양도인에게 이전되면 원래의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는 물론 가능하다.⁴²⁾

3.7 취소와의 중첩의 문제

3.7.1 양도의 취소

물권적 양도행위의 취소가 있게 되면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 이하에 의한 효과가 독일 민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없어진다. 따라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지의 의사표시는 대상이 없게 된다.

39) Lenski, 앞의 책, S. 126 ff.

40)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14.

41) Lenski, 앞의 책, S. 74 ff.

42) Bruck/Möller/Sieg, 위의 책, § 70, Rdn. 14.

3.7.2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 법률관계가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결과로써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보험계약 자체의 취소가능성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⁴³⁾ 독일 민법 제119조 이하를 원용하는 것은 보험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은 보험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사이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독일 민법 제14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적효과대로 그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⁴⁴⁾

3.8 해지무효시 보험자의 지시의무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이 개정⁴⁵⁾되기 이전에 통설⁴⁶⁾에 의하면 신의칙상(독일 민법 제242조) 보험자는 해지의 무효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법개정 이후, 즉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와 제7조에서 특별한 상담의무 및 정보의무를 규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법적기초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⁴⁷⁾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동기가 존재할 때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1항, 제1문, 제4항은 보험계약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이후에도 상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유인이 있는 경우로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에 의한 보험관계이전의

43) Bruck/Möller/Sieg, 위의 책, § 70, Rdn. 17.

44) Staudinger, in: Bruck/Möller, 앞의 책, S. 707.

45) 2007년 독일의 보험계약법 개정 배경에 대하여는 이필규/최병규/김은경, 앞의 책, 105쪽 아래 참조.

46)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32;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18; Lenski, 앞의 책, S. 123.

47) Staudinger, in: Bruck/Möller, 앞의 책, S. 707.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는 당사자 간의 지식차이 (Wissensdefizit)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통해 “법적 상품”을 수요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발생하는 양 당사자 간의 힘의 우열을 고려하는 것이다.⁴⁸⁾ 따라서 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자신의 희망과 수요에 맞는 보험보장개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보험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보험자의 지시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1항, 제1문, 제4항의 의미에서 상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보험자의 그러한 지시의무를 독일 보험계약법 제7조 제3항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 즉 동조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진행 중에 일정한 정보를 보험계약법정보시행령 (VVG-InfoV) 제6조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주에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해지표시의 무효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4. 효과

4.1 계약종료

4.1.1 일반 사항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로 인하여 계약은 1월의 기간으로 종료한다. 그리고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양수인의 해지는 그의 선택에 따라 즉시 또는 진행 중인 보험기간 만료시점에 소멸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는 보험자의 전보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건물화재보험에서는 신고한 지당권자에 대하여

48) Beckmann/Matusche-Beckmann/Rixecker, *Versicherungsrechts-Handbuch* (Beck, 2004), § 18a, Rdn. 1.

독일 보험계약법 제143조⁴⁹⁾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1.2 복수의 해지의 문제

양수인도 해지하고 보험자도 해지하면 누구의 해지표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부 주장된 견해⁵⁰⁾에 의하면 우선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독일 보험계약법 구법에 대한 이론으로서 새로운 보험계약자(양수인)가 행한 해지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⁵¹⁾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포기한 결과로서 보험자가 1월의 기간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물론 양수인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선택에 의하여 그가 전보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의 효력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⁵²⁾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행하여진 보험자의 해지는 무시하여도 된다. 그래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보험계약자(양수인)가 자신의 해지표시를 통해 합의된 책임기간의 말을 향해 해지하여도 양도인이 어쨌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독일 보험계약법

49) 독일 보험계약법 제143조 (저당권자에 대한 급부 의무의 지속기간) (1) 계속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는 자신의 저당권을 등록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지급기간 결정 후 또는 그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해지통지를 받은 후 1월이 지나기까지는 보험급부책임을 부담한다. (2) 보험계약관계의 종료는 자신의 저당권을 등록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의 통지 후,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시점이 보험자에 의하여 통지된 후, 또는 그가 다른 방법으로 종료를 안 후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 보험료지급지체로 저당권자가 승인한, 보험자의 해제에 의하거나 해지를 통하여 보험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0) KG, *JRPV*(1929), S. 426; Prölss/Martin, 앞의 책, § 70, Rdn. 8; Schwintowski/Brömmelmeyer/Hammel,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Zap Vlg. Rechts-U.Anwalt, 2008), § 96, Rdn. 15.

51)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41;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42.

52) Bruck/Möller/Sieg, 위의 책, § 70, Rdn. 42 참조.

제96조 제3항 제1반문, 제39조 제1항 제1문 참조).

4.2 양도인의 보험료지급의무

4.2.1 일반사항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3항 제1반문에 의하여 해지 이후에는 양도 인만이 보험료지급의무를 진다. 그러나 양도인의 책임은 종래와는 달리 전 보험연도 (Versicherungsjahr)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자가 전 보를 보장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만 부담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39조 제1항 제1문).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 제1문의 경우에는 구 보험계약자(양도인)는 1월의 기간의 도과로 인해, 그에 반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의 경우에는 즉시 또는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만료시점에 자신의 채무로부터 면책된다. 더 나아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급한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812조 제1항).⁵³⁾

4.2.2 보험료할인의 경우의 환급

보험자가 양도인으로 하여금 보험기간이 장기이어서 보험료할인을 해준 경우에는 양수인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에 의해 조기에 해지할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⁵⁴⁾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보험관계에서 그에 해당하는 유보규정을 둬으로써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급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⁵⁵⁾

53)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46.

54) Prölss/Martin, 앞의 책, § 70, Rdn. 9.

55)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45.

4.3 양수인의 보험료책임 배제

4.3.1 일반사항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양수인은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3항 제2반문). 이에 관한 채무명의를 양수인에게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의의소(독일 민사소송법 제767조)를 하여 방어할 수 있다.⁵⁶⁾ 독일 연방대법원의 지속적인 판례⁵⁷⁾를 고려하여보면 독일 민사소송법 제767조 제2항에 의한 배제를 하기위하여는 소송에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연방대법원의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양수인이 이미 소송절차에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실권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는 다른 문제이다.⁵⁸⁾

4.3.2 양수인의 보험료지급의무

양수인이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말로 해지를 선언한 경우 전보청구권의 권리자는 양수인이다(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 그러나 그 결과로 양도인이 유일한 보험료지급의무자이기 때문에(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3항 제1반문) 양도인이 지급지체의 효과를 받는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일 보험계약법 제38조에 의한 최고는 양도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⁵⁹⁾ 이 경우에 법률은 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을

56)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68, Rdn. 84.

57) BGH, NJW(C.H. Beck, 1987), S. 1691 등등.

58) Staudinger, in: Bruck/Möller, 앞의 책, S. 713.

59) Frey, *VersR*(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1959), S. 325; Lenski, 앞의 책, S. 119.

요구하지는 않는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34조를 유추하여 양수인을 일부 보호하는 결과는 가능하다. 즉 양수인은 보험보호를 계속 누리기 위하여 지체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독일 민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하여 그를 거절할 수는 없다.⁶⁰⁾

4.3.3 양수인에 대한 상계

양수인이 해지 이후, 그러나 계약종료 이전에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하여 전보청구권을 가진 경우 독일 보험계약법 제35조는 보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료청구권과 상계할 것을 허용한다.⁶¹⁾

4.4 양도인, 양수인의 내부관계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에 보험자와의 외부관계에서 보험료납부의무자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 점에 관하여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보험계약을 즉시의 효력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보가 1월의 기간으로 끝나는 경우(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1항 제1문)와 진행 중인 기간 종료시점으로 끝나는 경우(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 제2항 제1문 제2대안)에 대하여는 다름이 있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에게 해당비율만큼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려고 한다.⁶²⁾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일정한 전제하에서만 동의할 수 있다. 즉 그에 대한 명시적인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⁶³⁾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독일 보험계

60) Prölss/Martin, 앞의 책, § 70, Rdn. 9.

61)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44.

62)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56 f.

63) Honsel(Hrsg.), 앞의 책, § 70, Rdn. 48.

약법 제96조 제3항 제2반문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동조는 독일 민법 제426조의 연대채무관계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다음 보험기간으로까지 해지를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독일 민법 제280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⁶⁴⁾

5. 강행규정여부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는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보험계약법 제98조는 양수인의 보호라는 표제 아래 “보험자는 제95조 내지 제97조로부터 벗어나 양수인을 불리하게 하는 보험계약 상의 약정을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제96조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의 해지와 양도의 통지에 대하여는 문서형식이나 텍스트형식으로 할 것을 정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96조에서 벗어나 양수인을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6. 증명책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는 보험목적의 양도와 해지의 의사표시의 도달을 제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1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제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증명원칙이 양수인의 해지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수인은 특히 보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64) 구 법상황하에서 그러한 주장: Honsel(Hrsg.), 위의 책, § 70, Rdn. 48.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구상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Bruck/Möller/Sieg, 앞의 책, § 70, Rdn. 54 및 58 참조.

대하여 제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⁶⁵⁾

Ⅲ. 비교연구와 시사점

독일법제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 해지의 문제

독일 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에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소유하는 동안에 보험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험계약자 대신에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수 시점에 진행 중인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목적의 양수 사실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험자는 한 달의 기간을 준수하면서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계약관계를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자가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해지권한은 소멸한다. 다른 한편 양수인도 보험계약관계를 즉시 또는 진행 중인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을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양수인이 양수 후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지권이 소멸한다.

65) Heyers, in: Looschelders/Pohlmann, 앞의 책, S. 957.

2. 보험료 부담 문제

양수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보험료 지급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양도인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보호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내면 된다.

3. 사고시 책임 문제

더 나아가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 제97조에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만 하는 시점으로부터 1월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양도인에게 존재하는 보험을 양수인과 체결하지 않았었다면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양도통지해태 시 사고발생의 경우 양수인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구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

4. 종합적 검토

독일법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여 계약자 측을 보호하고 있다.⁶⁶⁾ 또한 강제처분, 이용권의 제3자 취득에 대하여 보험목적양도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음도 주목을 요한다. 우리의 경우 상법 제649조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목적 양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양수인의 해지권을 별도로 규정

66) 최병규, “보험목적의 양도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제금융위험관리 제9권 제4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8), 63쪽.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자의 해지권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 분담 여부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IV. 제도개선방안

1. 기존 입법론 주장

보험목적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서는 다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⁶⁷⁾

1) 양도통지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는 “보험자는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가 도달했어야 할 날로부터 1월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그 양도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월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입법론적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⁶⁸⁾ 그리고 동 견해는 양도로 인해 현저한 위험변경증가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과 상법 제653조의 규정을 결합하여 “보험자는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가 도달했어야 할 날로부터 1월 후에는 면책된다. 그러나 그 양도로 인한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1월 후에는 책임이 다시 있게 된다”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⁶⁹⁾

2) 상법은 추정주의를 취하므로⁷⁰⁾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양도가 위험

67) 2007년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에 대한 상세는 최병규, “보험목적양도와 청구권대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사항,” 법조 제613호(법조협회, 2007), 137-140쪽 참조.

68) 장경환, “보험목적의 양도의 통지”, 보험법연구1(삼지원, 1995), 177쪽.

69) 장경환, 위의 논문, 178쪽.

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가져온 이외에는 이전을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⁷¹⁾ 그리하여 손해보험에서는 당사자 이전방식이 실익이 있으며, 그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보험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와 양수인에게 각기 인정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⁷²⁾

2. 개정제안

상법 제6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개정안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 12. 31>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보험목적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목적의 양도의 통지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하여 지체 없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통지가 통상보험자에게 도달되었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보험사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양도인과의 계약을 양수인과는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통지가 자신에게 도달했어야 할 시점에 양도사실을 보험자가 안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속한다.
	④ 보험의목적이 양도되면 양도시점이 속한 보험기간의 보험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납입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수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양도인만 보험료를 납입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에 대하여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양도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70) 추정주의에 대하여 애초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주장으로는 박종성, “보험의 목적의 양도”, 재판자료 제53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법원행정처, 1991), 386쪽.

71) 장덕조, “상법 손해보험편에 대한 개정의견”, 보험법연구 창간호(한국보험법학회, 2007), 74쪽.

72) 장덕조, “상법 제4편 제2장(손해보험편) 개정의견”, 한국보험법학회 창립기념 학술 발표회 자료집(한국보험법학회, 2006. 10. 27), 9쪽.

V. 맺음말

오늘날 보험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험목적이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관계가 지속이 되도록 법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정치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⁷³⁾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그대로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재에도 상법 보험 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보험목적양도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있다. 원래 보험목적의 양도는 손해보험 총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점이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이 있으면 종래 인수한 위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수인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수인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물건은 무보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수인은 손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양도인으로서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함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법리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상법 제67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이러한 양도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73) 이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는 장덕조, “한국 보험법의 현재와 개정논의,” 금융법연구 제8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11), 247쪽 아래 참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79조 제2항은 보험목적양도의 통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불이행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양도인은 피보험이익을 잃게 되므로 승계의 추정이 아닌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양수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 통지한 자와 늦게 통지한 자를 차별화할 것인가도 문제되지만 이 문제는 보험료납입과 연계시켜 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 받았다면 통지를 늦게 받았다고 하여 양수인 측을 차별화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보험료지급관계도 분담을 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고일 2011년 12월 16일, 심사(의뢰)일 2012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8일)

주제어 : 보험목적 양도, 통지의무, 계약해지, 위반의 효과, 보험료납부의무, 급부거절, 화재보험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1.
- Beckmann/Matusche-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Beck, 2004.
- Bruck/Möller, *VVG, Bd. III, 9. Aufl.*, C.H. BECK, 2010.
- Bruck/Möller/Sieg, *VVG, 8. Aufl.*, C.H. BECK, 1961~2002.
- Honsel (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Springer, 1999.
-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Heymanns Verlag GmbH, 2010.
-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C.H.BECK, 2004.
- _____,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C.H.BECK, 2010.
-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 Aufl., C.H.BECK, 2003.
- Rüffer/Halbach/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 Nomos, 2009.
- Schwintowski/Brömmelmeyer,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Zap Vlg. Rechts-U. Anwalt, 2008.

2. 논문

- 박종성, “보험의 목적의 양도”, 재판자료 제53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91.
- 장경환, “보험목적의 양도의 통지”, 보험법연구1, 삼지원, 1995.
- 장덕조, “상법 제4편 제2장(손해보험편) 개정의견”, 한국보험법학회

- 창립기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보험법학회, 2006.
- _____, “상법 손해보험편에 대한 개정의견”, 보험법연구 창간호, 한국보험법학회, 2007.
- _____, “한국 보험법의 현재와 개정논의”, 금융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1.
- 최병규, “보험목적양도와 청구권대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사항”, 법조 제613호, 법조협회, 2007.
- _____, “보험목적의 양도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제금융위험관리 제9권 제4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8.

[Abstract]

A Korean-German Comparative Study on Problems and Revisional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n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Byeong-Gyu Choi*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citizens.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provide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In fact, insurance contract law has developed significantly worldwide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in Germany and Japan, there have been noteworthy reforms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existing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is a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ntered into force in 1963. In fact, the legal provisions in this Act have some problems. For this reason,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been mad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law-makers need to think it is essential to look at the relevant foreign provisions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Korea. Furthermor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VVG) has influenced Korean law because the Korean jurisdiction adopte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or the so-called Civil Law, and the Korean scholars can learn the regulatory reform from the recent development in Germany. The German reform by the enactment of the year 2007 are as such following: the reform of definition in insurance contract, the reflec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reform of insurance

* Professor of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police, the duty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the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the duty to guarantee contract dividend regularly. Moreover, the duty of disclosure has been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Germany. Japan also adopted the duty of passive answer with regards to the duty of disclosure.

Regardless of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object can be sold out to another person. The purchaser can make a new insurance contract. But between the times it can happen that the insurance object exists without insurance protection. It should be avoided. The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fire insurance. Therefore the most insurance contract law has regulations about legal treatment of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re is one regulation (§ 679 KCC).

In korean law, the purchaser is presumed as a insured. But presumption is not enough. The purchaser should be regarded as a insured. That is the attitude of german law. The parties should give notice about the fact of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to insurer. In the korean law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effects of negligence of the notice. The insurer and the purchaser should be able to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Furthermore the insurer should be able to reject the fulfillment of contract when the risk of the purchaser is too high. The old insured and the new insured (purchaser) should pay premium. The premium In this regard the korean law should be reformed. By the reform discussion we can refer to the rational contents of foreign (especially japanese and german) laws. The government, scholars, insurance associations and insurance companies should make hard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about legislation on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Key Words :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duty of notic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effects of violation, duty to pay premium, rejection of contract fulfillment, fire insurance